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5. 8 선고 2019가단142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한세민

변론 종결 2020. 4. 9.

판결 선고 2020. 5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 2014. 7.경부터 2016. 10.경까지 피고 소유의 땅 1,500평에서 도라지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그 대금에서 피고에게 5,000,000원만 주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였다. 피고는 일방적으로 도라지를 수확, 판매하여 45,000,000원의 판매대금을 받았을 것임에도 원고에게 대금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, 위 판매대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주기로 한 5,000,000원을 공제한 40,000,000원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.

2. 판단

갑, 을 각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땅에서 원고가 도라지 농사를 지어 수확한 도라지를 판매하면 그 대금 중 5,000,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주고, 나머지 대금을 원고가 갖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, 앞서 든 증거와 기록 전체를 종합하여도 위 땅에서 도라지가 수확, 판매되어 일정 정도로 판매대금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대금이 45,000,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지연